



인도네시아 Customs Alert 2021 년 8 월호

보세구역 규정 업데이트

2021 년 6 월 8 일 재무부장관(MoF)은 장관령 131/PMK.04/2018(PMK-131) 개정을 위한 보세구역(Kawasan Berikat)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65/PMK.04/2021(PMK-65)를 발행했는데 이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PMK-65 에 따른 개정 및 추가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세구역내의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처리 강조;
- 저위험 보세구역 사업자 및 보세구역내 사업자에 대한 회사보증 활용 강조;
- 과세 대상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시 부가가치세(VAT) 비과세 강조

PMK-65 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PMK-131 이전 규정	PMK-65 새 규정
<p>보세구역 사업자 (Pengusaha Kawasan berikat (PKB)) 및 보세구역내 사업자(Pengusaha dalam Kawasan Berikat (PDKB))의 의무</p>	<p>PKB 및 PDKB 는 조사 목적으로 관세청(DGCE)과 국세청(DGT)이 접근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를 생성하는 전자 인벤토리("IT Inventory")에 접속 권한을 부여해야한다.</p>	<p>PKB 및 PDKB 는 조사 및/또는 납세 의무 이행 감독 목적으로 반입 및 반출 관리를 위해 관세청(DGCE)과 국세청(DGT)이 접근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를 생성할 회계정보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자인벤토리 접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p>
	<p>최소 1 년 1 회 재고실사를 수행한다.</p>	<p>최소 1 년 1 회 재고실사 및 그 결과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고실사 후 2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과세 대상 물품의 인도가 아닌 보세 구역으로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LST)가 부과되지 않음.</p>	<p>과세 대상 물품의 인도가 아닌 보세 구역으로의 물품 반입에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p>
<p>다음과 같은 원산지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한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국외; b. 기타 보세 비축 구역; c. 자유지역; d. 관세지역내 기타 장소 (<i>Tempat Lain di Dalam Daerah Pabean (TLDDP)</i>); e. 특별 경제 구역; 및/또는 f. 정부가 지정한 기타 경제 구역 	<p>TLDDP 에서 반입한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증빙 자료로 세관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p> <p>위에 언급된 세금계산서에는 "보세비축구역에 관한 GR(정부령)에 따라 부가세 비과세"라고 표시되어야 한다.</p>	<p>TLDDP 에서 반입한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PKB 또는 PDKB 소유의 보세구역으로의 물품 반입 승인 서류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취득해야 한다.</p> <p>위에 언급된 세금계산서에는 "보세비축구역에 관한 GR(정부령)에 따라 부가세 비과세"라고 표시되어야 한다.</p>
<p>다음과 같은 과세지역내 기타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관세지역내 기타 장소; b. 기타 보세 비축 구역; c. 자유지역; d. 특별 경제 구역; 및/또는 e. 정부가 지정한 기타 경제 구역 	<p>수입과 관련 지불/세관 서류 첨부된 세금은 공제될 수 있다.</p> <p>보세구역에서 물품 인도 이외의 용도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VAT 또는 VAT 및 LST 가 부과되지 않음.</p>	<p>수입과 관련 지불/세관 서류 첨부된 세금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 회계연도에 공제될 수 있다.</p> <p>이용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과세 대상 물품의 인도가 아니므로 VAT 또는 VAT 및 LST 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p>

조항	PMK-131 이전 규정	PMK-65 새 규정
관세 지역 외부 원산지인 물품을 사용 목적 수입을 위해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	예를 들어, 원자재, 보조 재료 및/또는 포장 이외의 상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VAT 또는 VAT 및 LST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보조 자재 및/또는 포장재를 포함하여 과세 대상 물품의 인도가 아닌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은 VAT 또는 VAT 및 LST 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취소된 보세구역내 잔여 물품의 정산 요건	보세구역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가장 30 일 이내 TLDDP 원산지 물품 및 허가가 취소된 보세구역내 잔여 물품 정산은 아래와 같다: a. 해당 물품은 수출되어야 함; b. 해당 물품은 기타 보세비축 구역으로 이전돼야 함; 및/또는 c. 해당 물품은 TLDDP 로 출고해야 함.	보세구역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가장 30 일 이내 TLDDP 원산지 물품 및 허가가 취소된 보세구역내 잔여 물품 정산은 아래와 같다: a. 해당 물품은 수출되어야 함; b. 해당 물품은 기타 보세비축 구역으로 이전돼야 함; 및 또는 c. 물품 반입시 미징수된 VAT 또는 VAT 및 LST 는 정산돼야 함
기업보증 관련 규정	PKB 또는 PDKB 는 PMK-131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보증으로 기업 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저위험 프로필의 PKB 또는 PDKB 는 지역 사무소의 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PMK-65 의 주요 추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PMK-65 새 규정
보세구역 조세혜택을 받은 물품의 종류	해외납세자 소유 원자재, 부자재 및/또는 포장 및 포장 보조재는 보세구역내 보관 기간 동안 보세구역 조세혜택이 부여된다.
다음과 같은 원산지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한 요건: a. TLDDP; b. 기타 보세 비축 구역; c. 자유지역; d. 특별경제구역; 및/또는 e. 정부가 지정한 기타 경제구역	TLDDP 에서의 물품 반입을 위해서 PKB 및/또는 PDKB 는 VAT 또는 VAT 및 LST 미징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VAT 또는 VAT 및 LST 미징수 명세서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PKB 및/또는 PDKB 가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지역 외부로 부터 반입된 물품의 보세구역 외부로의 반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구역 반입시 보세관련 조세 혜택을 받은 해외 납세자 소유 원자재, 부재료 및/또는 포장재와 같은 물품(가공 및 갈합 결과를 포함)의 TLDDP 반출시 수입세, 소비세, 수입제세 (Pajak Dalam Rangka Impor(PDRI)), 및/또는 VAT 또는 VAT 및 LST 를 납부해야 한다. PDRI 및/또는 VAT 또는 VAT 및 LST 를 물품 반출시 납부해야 한다.

조항	PMK-65 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세, 소비세, PDRI 및/또는 VAT 또는 VAT 및 LST 는 물품 반출 세관 신고서 등록시 납부해야 한다. • PDRI 및/또는 VAT 또는 VAT 및 LST 가 체납된 후 정산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및 제재가 부과된다. • 해외납세자 소유 원자재, 부자재 및/또는 포장재와 같은 물품관련 정산된 PDRI 및/또는 VAT 또는 VAT 및 LST 는 공제되지 않는다. • 사용 목적 수입품에 대해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시 보세구역 물품 반출시 납부해야하는 VAT 또는 VAT 및 LST 가 과세된다. • 가공 및 조립/가공품 포함 해외납세자 소유 원자재, 부자재 및/또는 포장재등의 물품을 TLDDP 거주자에게 반출시 보세구역 반출에 해당하는 VAT 또는 VAT 및 LST 가 부과된다. • 가공 및 조립/가공품 포함 해외납세자 소유 원자재, 부자재 및/또는 포장재등의 물품을 TLDDP 거주자에게 반출시 보세구역 반출에 해당하는 VAT 또는 VAT 및 LST 는 세금납부증명서(Surat Setoran pajak (SSP))를 이용하여 세관신고서 등록 전 수령한 자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TLDDP 가 원산지인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시 PKB 및 PDKB 는 TLDDP 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시 조세혜택 즉 관세, 소비세 및 VAT 또는 VAT 및 LST 를 반환해야 한다. • PKB 와 PDKB 는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VAT 또는 VAT 및 LST 를 납부해야 한다. 언급된 VAT 또는 VAT 및 LST 는 세금납부증명서(SSP)를 이용하여 세관 서류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한다. 세관 서류에 첨부된 세금납부증명서는 물품을 수령한 납세자의 세금공제에 사용된다.
TLDDP 원산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KB 및 PDKB 는 보세구역 반입시 수입세 면제, VAT 또는 VAT 및 LST 미징수 등의 조세혜택을 받은 원자재, 부자재, 및/또는 포장재, 자본재등 물품에 대해 VAT 또는 VAT 및 LST 를 납부해야 한다. • 상기 VAT 또는 VAT 및 LST 는 세금납부증명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세관 서류에 첨부된 세금납부증명서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TLDDP 가 원산지인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p>자본재가 4 년 이상 보세구역에 유지되는 경우 TLDDP 가 원산지인 자본재의 반출은 VAT 또는 VAT 및 LST 가 면제된다.</p>

PMK-65 의 발행에 따른 여러 조항의 수정 및 도입에 대해 회사는 보세구역에서의 사업 활동 유지 및 현행 규정 위반 방지를 개정 및 추가 조항 유의하여야 함.

저희 팀은 보세구역 규정 관련 홍보 및 세미나를 제공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보세구역 소재 회사에 대한 자문 및 리뷰 업무 제공은 물론 보세구역 허가 취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PMK-65 는 2021 년 8 월 8 일 부터 발효됨.

Our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eam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Customs Alert** should be directed to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Partner

tturmanto@deloitte.com



Aldes Islamy

Senior Manager

aislamy@deloitte.com



Budi Herdiyanto

Manager

bherdiyanto@deloitte.com



Manuel Muson

Manager

mmuson@deloitte.com

You may also get in touch with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M&A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li Mardi Djohardi

alimardi@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Yan Hardyana

yhardyan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